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033호

나. 발 의 자 : 맹진영 의원 외 9명

다. 발의일자 : 2016. 2. 18.

라. 회부일자 : 2016. 2. 22.

II . 제안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서울시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III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에게 관내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격차 감소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컴퓨터와 함께 무상수리,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교육감은 인터넷과 게임 중독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안 제7조)와 사이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안 제8조)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23조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6. 2. 25 ~ 2016. 3. 4).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18일 맹진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에게 의안번호 제1033호로 발의되어 2016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효율화하여 서울특별시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한 의견

- 동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여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학생의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의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사이버 음란물의 차단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정보화수준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5 정보격차실태조사」¹⁾에 따르면 2015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9.5% 수준으로 정보격차지수를 최초로 산출한 2004년(45.0%) 보다 크게 개선(34.5%p↑)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 “지난 10여 년간 농어민·장노년층 정보화수준 약2배 향상”, 2016. 2. 3, 참고.

그러나 저소득층의 정보화수준은 정보취약계층의 전체 정보화수준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74.5%)이고 일반국민과도 25.5%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보접근 및 활용 등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의 경우 정부의 인터넷중독위험군²⁾ 비율의 지속적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위험군 비율은 2011년 10.4%에서 2014년 12.5%로 2.1% 증가하고 있어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³⁾

따라서 저소득층의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제정 취지 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의견(안 제6조~제9조)

○ 동 조례안은 제6조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컴퓨터 보급과 무상수리, 각종 소프트웨어 지원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관리,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 정보화 역기능을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등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 사항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국민 정보화 접

2) 인터넷중독위험군이란 유·무선 인터넷을 과다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함.

3)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2015. 4, 참고. 특히 청소년 위험군 추이는 (’11) 10.4%→(’12) 10.7%→(’13) 11.7%→(’14) 12.5%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근성 향상 및 활용성 증가를 위한 ICT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23조와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5)에 따라 교육정보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스마트교육, SW교육 등의 사업도 시행해 오고 있어 조례제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6)

○ 따라서 조례안의 적용범위, 중복사업의 최소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금액단위: 천원)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사업명 | 저소득층 자녀 | 초·중·고 학생 | 초·중·고 학생 | 초·중·고 학생 | 초·중·고 학생 |

4)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 ③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1. ~ 4. (생략)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6) 2016학년도 교육정보화 운영계획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2095(2016. 2. 25) 및 교육혁신과-3197(2016. 2. 26)

| | | |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
|------------------------|------------|-----------|-------------------|--------------------------|------------------------------|------------------------------|-----------------------------------------------|
| 사업 내역 (수혜 대상) | 컴퓨터 | 학년 | 초1~고1 | 초1~고1 | 초1~고1 | 초1~고1 | - |
| | | 자격 | 국 민 기 초 생 활수급자 | 국 민 기 초 생 활수급자 | 국 민 기 초 생 활수급자 | 국 민 기 초 생 활수급자 | |
| | 인터넷 통신비 | 학교 | 초·중·고·특 수 학교 | 초·중·고·특수 학교·각종 학 교 | 초·중·고·특수 학교·각종 학 교·방통고 | 초·중·고·특수 학교·각종 학 교·방통고 | 초·중·고·특 수 학 교·각종 학 교·방통고·학력 인정평생교육시설 |
| | | 자격 | 국 민 기 초 생 활수급자 | 국 민 기 초 생 활수급자 | 국 민 기 초 생 활수급자 | 국 민 기 초 생 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 |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
| | | 예산 | 컴퓨터 | 1,562,400 | 1,609,440 | 1,653,987 | 1,010,272 |
| 집행 액 | 인터넷통신비 | 6,896,264 | 6,165,856 | 5,645,868 | 5,645,553 | 5,646,158 | |
| 예산 | 컴퓨터 | 979,923 | 966,660 | 851,632 | 668,504 | - | |
| | 인터넷통신비 | 5,966,397 | 6,064,748 | 5,806,487 | 5,660,347 | 집행 예정 | |

※ 2016년도에는 컴퓨터지원 없음.

다.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의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매년 약 6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표1]에서 보듯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해 연 평균 약 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왔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바, 사업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동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지원 컴퓨터 현황, 지원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다른 시·도 전학 보고 등의 수작업 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자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이외의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사업 예산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7)

- 이러한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은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경우 비용추계서상 연평균 6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안 제10조와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시행하게 되면 낙인효과 및 개인정보유출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조례안 제정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8)

따라서 동 조례안에 따른 각종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예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조문체계 검토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적용 대상의 총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컴퓨터 등의 지원, 인터넷·게임 중독 및 사어버음란물 차단 등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과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문체계 및 내용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동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동관리 시스템을 추진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보화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소요예산(9천 6백만원)을 준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자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요인력 및 통합·관리에 따른 장·단점 등을 고려한 예산분석에 대해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2095(2016. 2. 25)

마. 끝으로

- 동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의 정보화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이미 상위법령에 따라 동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은 동 조례안이 예정하는 정보화소외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의 확대가능성, 중복사업의 최소화, 추가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6.3.1.] [법률 제13943호, 2016.2.3., 일부개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2.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른 지원금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마.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사.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다. 그 밖의 자동차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4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4항제1호마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6. 제4항제1호바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7. 제4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8. 제4항제2호: 제10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4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⑥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67호, 2016.3.2.,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40호, 2015.6.22., 일부개정]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